

## 「2026년 가상융합기술 랩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가상융합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해 가상융합기술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과 창업·사업화를 연계하는 「2026년 가상융합기술 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2.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파진흥협회장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석·박사생으로 구성된 ‘가상융합기술 랩’ 운영,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지원 및 개발물을 활용한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특화 인력양성'

#### < 가상융합기술 랩(VC-Tech Lab) >

- 석·박사 과정생 중심으로 확장현실(XR), 인공지능(AI) 등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과 관련된 서비스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 역량을 기르는 연구실
- ① 기술사업화 중심의 연구 ② 상용화를 목표로 서비스·콘텐츠 개발 ③ 결과물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필수

#### □ 지원 대상

- 가상융합기술 랩 2개

#### □ 지원 규모

- 총 2.6억원(가상융합기술 랩 2개 x 1.3억원)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6. 12. 31.까지

- 사업수행 평가결과('26.12월)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및 차년도 사업비 차등지원, 최장 3년(1+1+1년)까지 지원 가능

□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 확장현실(XR), 인공지능(AI) 등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가능한 가상공간 또는 가상·현실 융합 서비스 개발
- ※ 현재 디지털트윈 기반 XR 솔루션, 초실감 3D 모델링 기술 활용 부동산 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 중이며, 차별화된 프로젝트 제안 필요

□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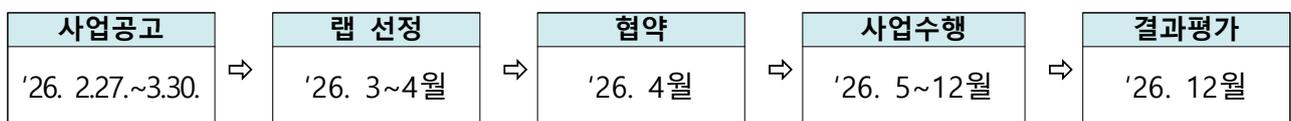
- (가상융합기술 랩 프로젝트 지원) 가상융합 서비스·콘텐츠의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창업·사업화 지원)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를 위해 창업·사업화 전문가 멘토링 지원,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네트워킹 지원
- (전문가 세미나 지원) 가상융합기술 최신 트렌드, 기술사업화 방안, 초기 창업 전략 등 가상융합산업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지원

□ 공고 기간

○ (공고기간) 2026. 2. 27.(금) ~ 2026. 3. 30.(월)

- (접수기간) 2026. 3. 9.(월) ~ 2026. 3. 30.(월), 11:00까지

□ 추진 일정



## 2. 신청 자격 및 참여 조건

### □ 신청 자격

#### ○ 가상융합기술 서비스·콘텐츠 분야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다목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고용노동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국방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경찰청,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 참여 조건

#### ○ (신청대상) 주관기관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해야 하며, 산학 (기업+대학)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 (주관기관) 가상융합기술 서비스·콘텐츠 분야 대학 ‘산학협력단’

- (역할) 가상융합기술 서비스·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획·디자인·개발
  - 과제책임자는 가상융합기술 분야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 구성,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인력양성 편중 방지를 위해 '26년 「가상융합기술 랩 지원」 사업 수행대학 2개교(계속지원 랩)\*은 신청 불가
- \* 고려대학교(서울·세종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 (참여기관) 주관기관 소속 과제책임자 또는 학생이 창업한 ‘기업’

- (역할) 가상융합 콘텐츠 개발 기술 및 교육지원, 학생 취업 기회 제공, 수요처 발굴 등 콘텐츠 상용화
  - 과제책임자 또는 학생(재학생,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법인 설립일이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 \* 최근 3년 이내(2023~2026년) 졸업생만 인정

#### ○ (민간부담) 신청대상자는 신청금액(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민간부담해야 하며,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편성

#### ○ (참여인력) 석박사 과정생 등 랩 참여 인력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과제책임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교수, 학부생, 구직자, 재직자 등 참여 가능)

\* 최종 선정 이후, '26.12.31.까지는 참여 인력이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10명(50%) 이상은 석박사 과정생 또는 석사과정생 이상의 동등 자격을 갖추어야 함

### 3. 제외 대상

#### □ 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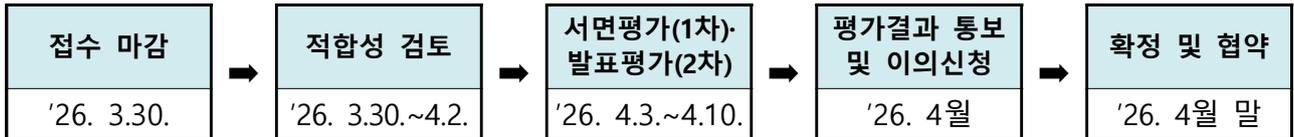
- 신청과제 또는 선정된 과제가 타기관과의 중복지원, 유사·중복과제로 결정될 경우 선정 취소·협약 해지·과업 범위 조정 조치될 수 있음
- 신청과제 또는 선정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지원기관,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기간, 서류 검토 기간 내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
  - \* 평가 이후에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다만,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사업자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9. 사업자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기간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10.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1.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12.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에 선정·수행 중인 경우
13.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4.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 □ 평가 절차

- (평가 절차)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참여 조건 등 적합성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서면(1차)·발표(2차)평가를 통해 우수 랩(1~2순위) 2개 최종 선정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기획·개발·투자 업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구분	주체	주요내용
적합성 검토	한국전파진흥협회	·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성, 참여 제한 여부, 가점 산출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1차)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랩 선정(3배수 내외)
발표평가(2차)	평가위원회	· 과제책임자 발표를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고득점순으로 최종 우수 랩(1~2순위) 선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전파진흥협회 ↔ 발표평가 대상 랩	· 평가결과 통보, 평가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7일 이내)
확정 및 협약	한국전파진흥협회	· 최종 랩 확정 및 사업계획 검토·협의, 협약체결

#### < 평가 관련 중요사항 >

- 발표평가는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는 비대면 평가로 운영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을 합산
-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랩은 '지원가능 랩',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랩은 '지원제외'로 분류  
- 최종 우수 랩(1~2순위)이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지원가능 랩' 중 차순위 랩이 순차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신청 랩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우수 랩(1~2순위) 중 동일 대학 랩이 존재할 경우, 최고득점 랩 1개만 선정하고 차순위 타 대학 랩 선정

- (평가 기준) 프로젝트 기획 및 사업수행 계획(30), 사업화 및 성과창출 계획(40), 융합인재 양성 계획(30) 등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으로 평가(총점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프로젝트 기획 및 사업수행 계획(30)	① 프로젝트 기획의 우수성·창의성·도전성·참신성 - 프로젝트 내용·방법·과정 및 결과물의 창의성·기술혁신 등의 도전성	10
	② 사업수행 계획 관련 정성적 및 정량적 목표 설정의 적정성, 프로젝트 최종 목표달성을 위한 연도별(1+1+1년) 계획	10
	③ 프로젝트 소요 예산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관리 계획 등 - 랩 인건비(인건비 현물 계상 등), 운영비 등 사용계획의 적정성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진척도 관리 계획 등	10
사업화 및 성과창출 계획(40)	④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 계획 - 신규 법인 창업 계획 및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콘텐츠 수익 모델 여부	20
	⑤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창출 방안 계획 - 결과물의 시장성 및 차별성 강화 전략, 특히 기술 사업화 계획 - 국내 및 해외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위한 계획	20
융합인재 양성 계획(30)	⑥ 랩 운영을 위한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절성 - 랩 프로젝트 참여 인력의 모집 계획 - 기획, 개발, 디자인 등 기능별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구성원 간 역할/업무분장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산학(기업+대학)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10
	⑦ 창업·사업화 연계형 고급인력 양성 계획 - 랩 프로젝트 연계 교과과정 운영 여부 - 참여 인력의 취업 및 청년 창업지원 방안 계획 - 참여 인력의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지원 방안(자체 콘텐츠 및 기술개발 여부, 수상실적, 특허, 논문 등)	10
	⑧ 랩 운영공간 및 시설, 장비 등 인프라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평가 시 가점에 관한 사항

- (가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총 3점 이내)

연번	우대기준	가점	증빙서류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동 사업과 관련된 수요처(기업기관 등)와 매출이 발생하는 계약이 완료된 경우	1	가점신청서, 계약서
2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중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자 경진대회(구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수상자가 있는 경우	1	가점신청서, 상장 사본
3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보유한 특허가 동 사업과 관련된 '핵심 전략 기술'에 해당할 경우	1	가점신청서, 특허증

※ 사업 신청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선정 이후 사업기간(1년) 동안 상기사항을 유지해야함

## 5. 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제출 방법

### □ 공고 기간

공고 기간	2026. 2. 27.(금) ~ 3. 30.(월)
-------	-----------------------------

### □ 접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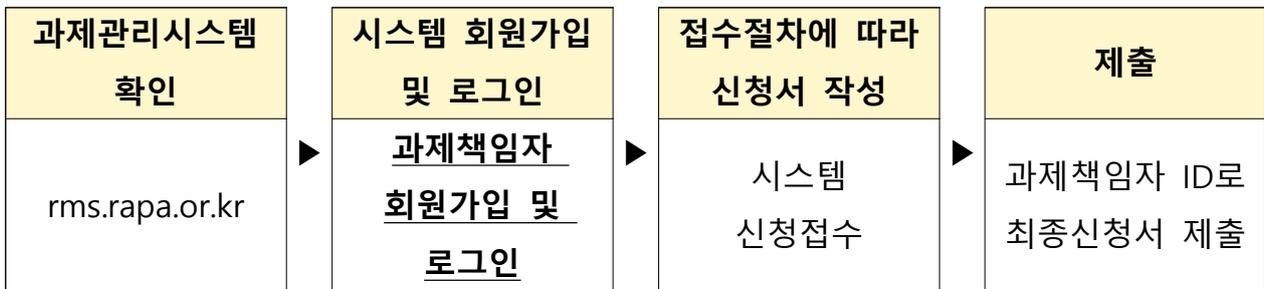
접수 기간	2026. 3. 9.(월), 10:00부터 ~ 2026. 3. 30.(월), 11:00까지
-------	--

### □ 접수처 및 신청서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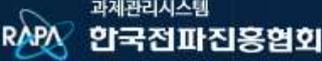
○ (접수처)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제관리시스템(RMS, rms.rapa.or.kr) 전산 접수

○ (신청서 제출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제출

#### < 신청서 제출방법 >



#### < 과제관리시스템 과제신청 메뉴 >

	알림마당	사업안내	과제신청
	공지사항 자료실 FAQ Q&A	사업소개 수요조사광고 사업공고 평가위원신청	과제신청 평가결과조회

## 6. 유의 사항 및 제출서류

###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26. 3. 30.(월), 11:00까지 주요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 모든 작업이 완료된 최종 제출본에 한함
- 마감기한 당일은 서버 폭주로 인해 접수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하루 전 반드시 접수완료 권장
-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보완이 필요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당해연도에 제공된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의 오류·불일치·고의누락 등이 발견되면, 사업 선정과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책임은 서류 제출기관에 있음
- 과제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접수해야 함
- 전산 접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발생
- 과제관리시스템(RMS)은 과제책임자는 본인 명의로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실무책임자, 정산담당자 회원가입도 필요
- 사업계획서 등 첨부파일은 가급적 50MB 이하로 저장 후 업로드, 50MB 이상의 첨부파일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서 최종본 및 관련 서류를 모두 등록한 후 최종 저장 및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저장 또는 제출되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전산 접수·제출이 완료된 지원과제만 정상 접수로 인정)
- 접수시간 종료 시 시스템에 의해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접수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인터넷 접수를 할 경우, 동시 접속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 제출서류

연번	제출내용	파일 형식	부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li> <li>※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파일에 부록 작성본도 포함되어야 함</li> <li>○ 부록 증빙자료(별첨1~10)</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50%;">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제출내용</th> </tr> </thead> <tbody> <tr><td>1</td><td>과제 책임자 세부현황</td></tr> <tr><td>2</td><td>참여교수 세부현황</td></tr> <tr><td>3</td><td>사업자현황</td></tr> <tr><td>4</td><td>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td></tr> <tr><td>5</td><td>컨소시엄 협약서</td></tr> <tr><td>6</td><td>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td></tr> <tr><td>7</td><td>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 참여 현황</td></tr> <tr><td>8</td><td>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td></tr> <tr><td>9</td><td>가상융합기술 랩 가점 신청서</td></tr> <tr><td>10</td><td>중복수혜사실 부존재 서약서</td></tr> </tbody> </table>	구분	제출내용	1	과제 책임자 세부현황	2	참여교수 세부현황	3	사업자현황	4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5	컨소시엄 협약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7	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 참여 현황	8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9	가상융합기술 랩 가점 신청서	10	중복수혜사실 부존재 서약서	한글 (hwp)	1부
구분	제출내용																								
1	과제 책임자 세부현황																								
2	참여교수 세부현황																								
3	사업자현황																								
4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5	컨소시엄 협약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7	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 참여 현황																								
8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9	가상융합기술 랩 가점 신청서																								
10	중복수혜사실 부존재 서약서																								
2	○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	PDF	각 1부																						
3	○ 주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PDF	각 1부																						
4	○ 주관 및 참여기관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PDF	각 1부																						
5	○ 주관 및 참여기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PDF	각 1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및 참여기관 최근 3년간 재무제표</li> <li>※ 2023~2025년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발급본) 원본 각 1부</li> <li>※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 표준재무제표만 제출</li> <li>※ 20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5년도 말 추정재무제표 제출</li> </ul>	PDF	각 1부																						
7	○ 과제책임자 소속 대학의 재직증명서	PDF	1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IS(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본인제재정보 확인서</li> <li>※ NTIS(ntis.go.kr)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 조회 → 본인제재확인</li> </ul>	PDF	1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IS(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차별성 검사 인증서</li> <li>※ NTIS(ntis.go.kr) 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li> </ul>	PDF	1부																						

## 7. 관련 법령 및 문의처

### □ 관련 법령 및 적용규정

<b>관련 법령</b>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시행령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b>적용 규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li> <li>2.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li> <li>3. 기금사업 점검 계획 등에 관한 지침</li> <li>4.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li> <li>5.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li> <li>6.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li> <li>7.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li> <li>8. 2026년도 가상융합기술 랩 지원사업 수행지침</li> <li>9. 2026년도 심의위원회 운영지침</li> <li>10. 2026년도 가상융합기술 랩 지원사업 협약서</li> <li>11.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부과하는 지원조건</li> </ol>

※ 관련 법령 및 적용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최신 규정을 따름

### □ 문의처

구분	담당자(이메일) 및 주소	비고
사업문의	가상융합산업진흥센터 조성민 대리(cho@rapa.or.kr)	02-317-6156
	가상융합산업진흥센터 강보규 주임(bogyurr@rapa.or.kr)	02-317-6071